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증원한 정원 중 해양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204명(경정 1명, 경감 8명, 경위 15명, 경사 50명, 경장 55명, 순경 74명, 9급 1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며, 항공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정원 60명(경사 20명, 경장 20명, 순경 20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2024년 12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을 신설하고, 수사 관계인의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 조정하고,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일부 평가대상 조직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30. ~ 12.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훈련담당관 및 해양치안빅데이터팀”으로, “총경으로 보한다”를 “총경으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3.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공데이터 관련 역량강화 교육
5. 각종 통계의 관리

제8조제1항 중 “수사기획과ㆍ수사과ㆍ형사”를 “수사기획과ㆍ수사심사과ㆍ형사”로, “수사기획과장ㆍ수사과장ㆍ형사과장”을 “수사기획과장ㆍ

수사심사과장ㆍ형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수사업무 관련 지시사항 관리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과장”을 “수사심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사 관련 법무지원 업무

5. 영장심사ㆍ수사심사에 관한 제도ㆍ정책 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ㆍ수사심사관 지도ㆍ관리

6. 인권보호정책 수립ㆍ지도 및 수사경찰 청렴도 평가 관리

7.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 관리

별표 4 중 총 계 “503”을 “505”로 하고, 일반직 계 “93”을 “9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4”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 계 “521”을 “5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1”을 “11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를 “4”로 한다.

별표 9 제1호1)의 업무란 중 “수사기획과”를 “수사심사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3)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2024년 12월 14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보좌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인사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8. (생 략) 9. 각종 통계관리 10.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제3조(기획조정관) ① ----------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인사담당관・교육훈련담당관 및 해양치안빅데이터팀---------- 총경으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해양치안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3. 공공데이터의 수집·관리·제공 및 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공데이터 관련 역량강화 교육 5. 각종 통계의 관리
제8조(수사국)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수사과·형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수사과장·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수사 관련 법무지원 업무 3. 영장심사·수사심사에 관한 제도·정책 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수사심사관 지도·관리 4. 인권보호정책 수립·지도 및 수사경찰 청렴도 평가 관리 5.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 관리 6.·7. (생 략)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제8조(수사국) ① ------ 수사기획과·수사심사과·형사---------- 수사기획과장·수사심사과장·형사과장----------. ② ----------. 1. (현행과 같음) 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수사업무 관련 지시사항 관리 <삭 제> <삭 제> 6.·7. (현행과 같음) ③ 수사심사과장----------

장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	3. 수사 관련 법무지원 업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 관리	5. 영장심사·수사심사에 관한 제도·정책 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수사심사관 지도·관리
<신 설>	6. 인권보호정책 수립·지도 및 수사경찰 청렴도 평가 관리
<신 설>	7.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 관리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4]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503	505	+2
·	·	·	
·	·	·	
일반직 계	93	95	+2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4	+2
·	·	·	
·	·	·	

[별표 4의2]

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521	523	+2
·	·	·	
·	·	·	
일반직 계	111	113	+2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4	+2
·	·	·	
·	·	·	